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-1383호

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”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“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)” 제38조제4항 및 “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(해양수산부 훈령 제479호)” 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“2021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”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9일

해양수산부장관

1. 제정목적

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

2. 적용범위
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·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

3. 구성내용

제1장 총칙

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

제3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

4. 적용일시

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.

5. 기 타

2021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(www.mof.go.kr)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인 한국항만협회(02-2165-0094) 홈페이지(www.koreaports.or.kr)에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